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8. 31.(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동아일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7-28-157)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동아일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8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동아일보사에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시정명령(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동아일보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소유한 (주)채널에이의 주식을 (주)채널에이 전체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유지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PP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일간신문 경영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 경영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종편PP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간신문 경영법인인 (주)동아일보사(기존 특수관계자 포함)는 (주)채널에이의 주식을 30.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동아일보사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채널에이 주식소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3조는 동일한 개인이 단독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두 법인 모두에 3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률 규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주)동아일보의 대표이사인 김재호는 동아일보사의 30% 이상을 출자하였고, 고려학원 이사장으로서 고려학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학원은 (주)동아일보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먼저 고려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고려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고려학원의 정관은 이사회 임원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김재호 이사장은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장 개인 의사에 따라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재호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정 의결 되거나 보완지시를 받은 안건이 6건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채널에이에 대한 승인, 재승인 심사 시 고려학원과 (주)동아일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또는 처분이 없었으므로 본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처분 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려학원 이사장의 권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재호 이사장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이사와 합하여 고려학원의 임원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김재호 이사장 취임 시점과 현 시점 모두 김재호 이사장 및 관련자가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사회 구성 관련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김재호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고려학원 이사들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이사장의 선임 안건 발의 및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선임된바 있습니다.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동 건과 관련해서 '11년 승인 시점 이후에 김재호의 지위가 이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되었고, 이사 임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역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해야 하나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사 존재 하더라도 그것이 해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주)동아일보사에 대한 방송법 위반 처분의 원인이 명백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 피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첫째,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주)동아일보사에 시정명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고, 둘째 (주)동아일보사가 방송법을 위반하여 소유한 주식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됨을 고지하겠습니다. 셋째, (주)채널에이에는 (주)동아일보사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통지하고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주)동아일보에 시정명령 및 방송법상 주식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정지,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 이전에 우리 사무처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심인 의견을 보면 동아일보의 대표자인 김재호 사장이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2012년 5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 측 의견을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위원회의 현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김재호 이사장이 취임한 것이 2012년 5월이고 위원회가 2014년에 재승인 심사를 한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연초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보고서상 다른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 재승인 과정에서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이번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특정법인의 대표자이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지위라든가 그때 당시 이사회 구성이나 대표자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인지를 못한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인지했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방송사업에 진입제한을 두고 특히 허가나 승인 시에 소유제한까지 두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을 높이고 민주적인 여론 형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일간신문의 경영법인, 즉 특수관계자 주식 소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행정처분 한다는 것이 여러 단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점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실무진 노고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 초과지분을 해소하면 방송법에 따라 굉장히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외에 다른 종편PP에서도 혹시 이런 주식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이번 재승인 심사를 확인하면서 다른 종편PP의 경우에 그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채널A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소유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지만 재승인 심사 시에는 평가항목에 소유제한 여부가 포함되어야만 입법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미진하고 넘어간 것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 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2014년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보면 신청법인의 적정성이 20점 배점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5년에 보니까 이 항목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신청법인의 적정성이라고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15년에 저희가 재허가 및 재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때 저희가 봤던 부분이 지상파 재허가의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었습니다. 다만, 종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때는 지상파와의 형평성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삭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종편이 승인을 받고 나서 이번 재승인 때 한 6년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최대주주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오늘 안건의 처분 내용이 논란을 빚을 정도라고 한다면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넣어서 종편PP들도 명확하게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되고 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 심사 과정에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주주에 대해 다시 평가하든지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 3기 위원회 때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달리 말씀드리면 실무가 부실했던 것입니다. 그전에 할 때 충분히 검증이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조금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2012년 5월에 이사장이 되면서 특수관계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이 부분이 걸리지 않고 위반한 상태로 우리가 재승인을 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3년 지난 지금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책임도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사에서 법적인 다툼을 걸어 올 때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사를 엄중하게 해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고, 문제는 어쨌든 위반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라' 이런 시정명령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시정명령 외에 동아일보사에서 자율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편다든가 시정명령 없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위법사항을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방송법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든지,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김재호 이사장이 사임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한 바로는 동아일보사 쪽에서는 지분 부분에 대한 증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피심인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재호 본인은 아니었지만 대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지금 지분을 처분하고 매각을 하거나 증거를 하는 것이 시장 형평상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돈은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수십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사업자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쨌든 이것이 해소가 중요하니까 위법사항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계속 독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어려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책임도 있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전에 사무처 의견은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규정 문제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놓고 법적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일부러 알고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뒤늦게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업자 의견청취까지 했습니다만 초과지분 보유의 고의성이나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않은데 있어서 어떤 의도성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느끼셨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만, 사무처 판단으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법에는 시정명령, 이 정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혹시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초과지분 해소 문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들은 사업자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 건은 위반 정도는 경미하지만 주식 초과 그 자체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큰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 가>를 논의하고 <의결안건 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흡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17년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당시 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공익채널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입니다. 공익채널 선정계획 수정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공익채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익채널 선정 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기본계획 보고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분야 고시 개정입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PP 중 공익채널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pool을 검토한 결과, 농·어업 등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관련 신청가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지원’ 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선정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선정 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선정 심사를 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장 추진은 공익채널의 경우 방송법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에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접근성 확대입니다. 선정된 공익채널이 주로 고가 상품군에 편성되어 시청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 공익채널을 저가 상품 묶음에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의무송출 채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의무송출 제도 내실화 및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익채널 중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상태와 자체 제작 역량 부족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민간운영 공익채널 선정 사업자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입니다. 선정 심사의 일관성 제고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매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을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결과적으로 지역을 포함시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산업, 지역사회 관련해서 이것이 공익채널로 지정되면 당연히 의무송출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의무송출이라면 그것이 전국으로 송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지역 분야를 추가하고자 한 것은 여러 가지 교양 분야의 채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현재 분류된 3가지 분류 안에서 포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9Colors라든가 MBC넷 같은 PP들이 각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뽑아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물론 그 지역민들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역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방송들을 저희들이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붙임>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방통위에 공익채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업자들 중 (주)우리농수축산티브이, (주)지자체티브이 이런 채널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락한 원인 중 하나가 공익채널의 분야에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이라는 분야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향후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역에 아주 편중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전국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지역 부분이라도 감안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사업자들을 불러서 의견청취도 해 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신청해서 선정된 9개 사업자가 워낙 다른 PP들에 비해 공익 분야에서 특히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추가한 내용대로 만약 추가 선정이 가능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하는 채널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우월감에 따른 판단으로 '신청해 봤자 선정이 안 될 것이다, 경쟁력이 우리가 약하다' 이런 자평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기존 방송사업자만 선정되면서 별로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방송산업의 육성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침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따로 하고 지역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준하는 그런 방송사도 선정이 되도록 범위를 넓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가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주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채널로 선정돼도 이점이 크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매력이 없습니다. 타이틀만 있지, 예를 들어서 공익채널이 되면 의무 송출은 시켜 주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저가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가 상품에 끼워 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잘 못 봅니다. 그런 데 대한 매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공익채널로 지정되면 제작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콘텐츠 제작에 어떤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먼저 말씀드렸던 의견이 가장 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

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에서 송출 제도의 보완이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자들이 볼 때 '공익채널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채널들도 더 분발할 것이고, 어쨌든 공익 채널이 되기 위해 내부 발전도 더 의욕적으로 할 테고, 그래서 어쨌든 지정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유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지원 해 주는 결정을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선정만 해 주되 별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는 유료방송채널 심사를 우리가 다시 갖고 오는 것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중장기, 지금 당장은 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에 의견 개선할 때 충분히 잘 이야기해서 유료채널을 재허가라고 하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심사를 할 때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좀 전에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준비한 5가지 방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진입 활성화 그리고 시청자 접근성 확대, 콘텐츠 경쟁력 제고, 예측가능성 제고 다 접근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2가지 정도만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기정통부에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공익채널 가운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민간 파트가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에 나왔듯이 육아 방송이나 아니면 예술TV Arte 같은 쪽인데 이런 쪽과 관련해서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2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을 내년 초부터라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내년 2분기로 해 둔 것은 과기정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제작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분기 정도로 데드라인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 하기 위해 당겨 볼 수 있는 노력의 여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데드라인을 당기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활성화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평가를 할 때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가점이나 이런 형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평가기준을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 것도 과기정통부와 연관된 사안인데요. 현재 머스트캐리(must-carry)이지만 기본형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의 가시청 권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전체 가구 중 약 54%만이 디지털 셋톱을 소유한 진정한 디지털 전환 가구여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논점과 의제로 삼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처리할 의결안건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안)이 보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정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것이고, 방송 분야에 대한 조정이나 다른 부분들은 시행령,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안전에 있는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방송법시행령 개정이나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안전에 보면 분야가 3개가 있고, 여기에서 분야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은 고시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우리가 고시를 고쳐서 지정 분야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것을 재의결해야겠네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고시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선정할 때부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6-1. 의결사항

### 나.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7-28-158)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및 인정 분야입니다. 공익채널의 경우에는 공익성 방송분야(방통위 고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이렇게 3개 방송분야별로 채널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선정 및 인정 절차는 오늘 「기본계획」이 의결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자의 제출 서류 등을 평가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여부, 조건부과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공익채널은 7인, 장애인복지채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법 및 기준입니다.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17년도 심사 항목을 준용하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 심사항목 중 '관련 법령 준수' 항목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항목과 같이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기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및 인정 기준입니다. 먼저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순으로 3개 이내 선정하되, 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먼저 신청요령을 공지한 이후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17년 11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선정·인정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앞에 보고안건과 연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도개선을 반영한 고시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재의결된다면 지역분야가 들어가서 재의결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아까 보여 드렸던 일정에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고시는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올해 고시가 개정되고 나면 방송분야가 추가 되는 것은 내년 4분기쯤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내년에 선정할 때 분야를 그렇게 조정해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심사위원단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단은 매년 재구성해야 하고, 다만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고시로 제정하도록 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면 저희가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절차,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을 고시로 상향해서 거기에 따라 별도의 기본계획을 그 고시를 기초로 해서 만들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고시 개정 시기가 조정된다면 앞서 말한 이중 작업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고시 개정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절차가 소요됩니다.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몇 달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채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한 군데만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 이내로 선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선정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무송출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채널이 수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장애인복지채널은 선정되는 것이 한 곳밖에 없고, 또 실제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내용 콘텐츠를 담아내는 방송이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복지TV만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들이 TV에 많이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활동반경도 떨어지니까 TV채널 시청도 많은데 어떻게 장애인 채널이 1개밖에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실태를 볼 때 우리가 장려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채널 하나만 운영이 되고 또 하나만 계속 선정이 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당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여기 정책에 담아서 장애인복지채널 선정할 때 그런 내용도 들어감으로써 채널사업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장애인복지채널 하나 만들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자꾸 방송 콘텐츠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이 여러 개 채널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장애인복지채널 하나밖에 없다면 그만큼 방송이 침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기본계획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방통위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전문편성PP로는 복지TV가 유일하고 방통위 기반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도 100% 자막방송 하도록 방통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위원장으로 내리 참여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4기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전부 다 가 봤습니다. 공익채널로 선정되고, 특히 장애인복지채널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방송의 질이 떨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뻔히 알지 있지 않습니까? 자막방송 그리고 화면해설방송은 특히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채널에서 내보내고 있는 모든 채널은 자막이나 수화, 화면해설방송을 포함해서 나갑니다. 지금 재정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채널을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일부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송채널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방송 시청자 대다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소관기관은

복지부인데 실제로 보면 복지부가 장애인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 사무처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어찌됐든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지원해 달라’, 아니면 ‘복지부에 요청한다’, ‘그러면 또 왜 이 채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또 제가 장애인복지채널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복지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애인복지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은 공익성이 커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 7-1. 보고사항

### 나. 2017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17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평가 개요입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사업은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등록대상 PP들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라디오를 제외한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채널 중에서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즉 300일 이상 방송한 채

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려운 채널 그리고 공공채널,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 및 성인채널과 같이 평가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채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대상은 방송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채널을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승인·재허가 대상인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 즉 직전 3년간 방송사 매출액이 평균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은 채널로 중소규모 및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PP가 운영하는 채널이 대상이 됩니다. 평가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경쟁력을 총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그룹별로 나누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결과는 그룹별 상위 2개 등급인 '매우우수'와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개하고,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PP에 대해서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사항입니다. 그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에 평가그룹과 관련해서 가 그룹 인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가 그룹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평가 시행연도의 직전년도 방송사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인데, 이것이 매년 방송사업 매출액 300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평가그룹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년도를 "평가 시행연도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하여 그룹 분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지금부터 11월까지 방송평가를 실시해 제작역량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말에 위원회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 그룹, 나 그룹으로 규모에 따라 분류하지 않습니까? 가 그룹은 몇 개 정도 되고, 나 그룹은 몇 개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매년 분류가 바뀌기는 하는데 업체수는 150개 정도 되고 비율은 거의 5:5나 6:4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선정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매년 전년도 실적이 아니라 3년간 평균을 내서 바꾸면 저렇게 옮겨가는 방송사가 몇 개나 예상됩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1개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매년 실적기준에 따라 299억원을 한 곳이 있고 301억원을 했다면 매년 변경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3년씩 평균한다면 트렌드를 볼 수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기본적으로 가 그룹은 굉장히 큰 규모의 대형사업자들인데 300억원에서 약간 미달하거나 오버하는 것 때문에 큰 그룹으로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하면 대상자로서는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나 그룹에서 가 그룹으로 승격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형편이 어떻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가 그룹과 나 그룹에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그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가 그룹으로 편입되면 아마도 자기들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명예도 높아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가 그룹으로 편입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채널 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런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가 그룹, 나 그룹으로 나눈 것이 원래는 그룹 구분이 없다가 그룹을 구분하지 않으면 자본력이 뛰어난 PP들에게 너무 유리한 것 아니냐, 규모는 작더라도 역량이 뛰어난 이런 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데만 나눠서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게 하기 위해 그룹을 나눈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 그룹으로 간다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지, 메이저리그냐 마이너리그냐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혜택이라고 하면 유일해 보이는 것이 '매우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방송사에게 우리가 방송대상을 주는데, 상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가 그룹과 나 그룹 1개씩 주는데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외적으로는 일단 방송대상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PR 하기는 좋겠네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가 그룹에 끼어서 대상을 받기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나 그룹에서 계속 대상을 노려볼 그런 방송사는 가 그룹으로 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300억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매출이 성장해서 큰 회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아까 6년 됐다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한지 6년이면 평가결과에 관련된 종합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종합 분석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아직까지 그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이 사업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수출이나 한류 콘텐츠 등을 매개로 해서 콘텐츠 제작능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단, 정책적인 지원,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그룹 나그룹에 관계없이 각 그룹별로 매년 평가를 해 보면 인적자원 경쟁력에 어떤 부분이 증가한다거나 유통파트가 이런 변동이 있다거나, 이를 테면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조금 더 두고 업체들도 어떤 분야를 더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것이 되면 사실상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민간업체들이나 아니면 방송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체적 시계열 분석을 해 주셔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올해로 하면 6년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년에 걸친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들에게 저희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줄 때는 이런 요소들의 약점·강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수', '매우우수'를 공표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업체에 대한 컨설팅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전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 없고, 오늘 이렇게 논의된 안전 중에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문제라든지 지금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신장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방통위가 진흥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새로 방통위원으로 와서 안전들을 다뤄보면서 그런 기능이 없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효율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흥기능을 반드시 방통위원회가 가져와야지 이런 논의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해서 이것을 실현시켜야 할 사안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